



MINI Market Report

국가	인도
제품	냉동만두 (MEAT FREE)

※ 본 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추후 최종보고서를 다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인도 시장 정보	1
1. 수입추이	1
2. 소비트렌드	2
3. 가공식품 동향	2
II. 인도 가격 정보	15
III. 인도 통관 정보	5
1. 관세율	5
2. 통관 절차 시 관행 및 유의사항	5
3. 통관 절차	9
IV. 인도 라벨링 정보	18
1. 라벨링 유의사항	18
2. 라벨링 표기내용	20
3. 인증	21

※ 참고자료

인도 시장 정보

1. 수입추이

- 냉동만두(MEAT FREE)는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파스타와 쿠스쿠스(couscous) (조제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분류되며 가장 근접한 HS CODE는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로 파악되었음
- HS CODE 「1902.20」에 대한 인도 수입 추이
 - 인도는 2013년 77만 7,647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고, 주요 수입국으로는 이탈리아, 호주, 한국, 스페인, 영국 등이 있음
 - 인도의 최대 수입국은 이탈리아로, 60만 6,988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30% 증가한 수치임
 - 이탈리아에 이어 호주로부터, 8만 3,106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53.46% 감소한 수치임
 -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4만 710 달러 규모를 수입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8.31% 증가한 수치임

India Import Statistics					
Commodity: 1902.20, Pasta, Stuffed (Including Ravioli, Cannelloni And Lasagna), Whether Or Not Cooked Or Otherwise Prepared					
Calendar Year: 2012 - 2013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3/2012
	2012	2013	2012	2013	
World	484,711	777,647	100.00	100.00	60.44
1 Italy	263,905	606,988	54.45	78.05	130.00
2 Australia	178,571	83,106	36.84	10.69	- 53.46
3 Korea South	31,728	40,710	6.55	5.24	28.31
4 Spain	0	20,522	0.00	2.64	0.00
5 United Kingdom	0	14,395	0.00	1.85	0.00

6	Thailand	0	9,274	0.00	1.19	0.00
7	Malaysia	1,963	1,863	0.40	0.24	- 5.08
8	Israel	0	789	0.00	0.10	0.00
9	United States	82	0	0.02	0.00	- 100.00
10	China	0	0	0.00	0.00	0.00

출처 : GTA(<http://www.gtis.com/>)

2. 인도 만두 관련 시장 동향

- 인도에는 삼각형 모양의 인도 전통요리인 사모사(samosa) 만두가 있음
 - 사모사는 인도 문화권의 명물 음식으로 다진 고기와 야채 감자들을 섞은 속을 밀가루로 만든 피 위에 놓고 삼각형으로 접어서 튀긴 만두로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의 특성상 우유나 버터 조차도 넣지 않는 채식용 사모사도 있음

3. 소비트렌드

- 인도 전체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12억명이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인구는 노년층이 적고 청소년층이 많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임. 구매력 높은 15-54세 경제활동 인구가 7억명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식품 시장의 소비활성화가 예상됨
-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는 종교를 가진 인구의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힌두교 신자는 8억명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임
- 힌두교에서는 달걀과 소고기, 가금류, 염장한 돼지고기, 양파, 마늘, 버섯, 무청 등을 금기시하며,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와 법(할랄 인증)대로 도축되지 않은 육류 등의 취식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 수입 농식품 시장 공략을 위한 품목 선정 시, 종교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기시되는 식품군과 별도의 인증(예: 할랄 인증)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함

- 인도 사회의 현대화와 산업화로 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도인들 사이에서 편리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즉석식품은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편의식품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3,350만 달러 규모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4년까지 두 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즉석 편의식품은 조리과정 없이 바로 먹는 RTE(Ready-to-eat), 단순가공 및 가열 후 먹는 (Ready-to-heat), 혼합된 요리재료를 간편 조리 및 가공 후 먹는 RTC(Ready-to-cook)가 대표적임
 - RTE 식품시장은 크게 냉동식품과 통조림 식품으로 구분되고, 이중 상온 보존이 가능한 통조림 식품이 약 60%를 차지함
 - RTC 식품 중에서는 인스턴트 스프와 라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근래에는 보존성, 휴대성, 운반성을 두루 갖춘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은 즉석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 즉석식품은 지역과 문화의 다양성 및 서양 음식문화의 대중화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소비자들은 편리하면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편의식품 선택에 있어 ‘저칼로리, 저지방 및 저콜레스테롤’ 등의 표시가 있는 가공식품을 선호함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까다로운 식단 선택으로 인도의 즉석식품 업체들은 품질 및 위생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가공식품 동향

- 가공식품 수입시장 확대 전망
 - 핵가족화와 직장 여성 증가 등 사회적 변화, 전반적인 소비자 구매력 증대, 즉석식품 시장의 성장세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인도 내 가공식품 생산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가공 생산 인프라의 경우 단기적으로 확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 내 가공식품 수입 시장은 한동안 지속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즉석 식품 시장의 성장세

- 인도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맞벌이 가정증가, 생활방식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트렌드로, 맛과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편의 및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하도록 레토르트(Retort) 파우치에 넣은 즉석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라면, 파스타, 디저트, 카레 페이스트 양념, 즉석 전통요리 등의 즉석 식품 부문도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300g 미만의 레토르트 파우치에 포장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인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즉석 식품 시장의 경쟁 구도로 인해 인도 즉석식품 업체들은 품질 및 위생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임. 인도 식품 회사인 ITC는 'Kitchen of India' 브랜드로 즉석 카레 및 상온 보존이 가능한 즉석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으며 유명 호텔주방장이 만든 고급화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하였음. 또한, 글로벌 업체인 네슬레와 유니레버도 라면류의 즉석식품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어 즉석식품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 인도 즉석식품은 지역과 문화의 다양성 및 서양 음식문화의 대중화로 토마토, 마실라, 치킨 맛 이외에도 이국적인 새로운 맛을 선보이는 즉석 식품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저칼로리, 저지방 및 저 콜레스테롤' 등의 표시가 있는 식품의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설탕 대신 스위트너나 아스파탐과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는 무설탕 제품들이 제과 및 음료와 같은 인스턴트 시장에서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도 즉석식품 시장은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가공, 제조, 멸균 및 포장 등의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체적인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음. 따라서, 현재는 즉석식품 시장 내 인도 현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소비자들의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성 역시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음

II 인도 가격 정보

□ 인도 온라인 매장 판매가격


- Tradus 온라인 매장 판매 현황¹⁾

업체명	Goveg	Haldiram	Haldiram
제품 이미지			
제품명	Veggie Samosa Cheese n Corn (160g)	Samosa (200g)	Mini Samosa (200g)
가격	INR 98	INR 48	INR 48


업체명	Vimal	Farsan	Farsan
제품 이미지			
제품명	Frozen Cocktail Samosas (400g)	Punjabi Samosas (540g)	Vegetable Samosas (350g)
가격	INR 150	INR 99	INR 99

1) 출처 : Tradus (<http://www.tradus.com/>)

업체명	Al-Kabeer	Al-Kabeer	Al-Kabeer
제품 이미지			
제품명	Chicken Samosa (240g)	Frz Veg Samosa (240g)	Mutton Samosa (240g)
가격	INR 105	INR 80	INR 130

업체명	Al-Kabeer	Maiyas	Samosa
제품 이미지			
제품명	Frz Veg Cheese Samosa (240g)	Dry Samosa (200g)	Samosa Dal Wala (250g)
가격	INR 160	INR 55	INR 110

- eemli 온라인 매장 판매 현황2)

업체명	Goveg Veggie	Vimal	Vimal
제품 이미지			
제품명	Samosa Cheese n Corn (160g)	Frozen Punjabi Samosas (400g)	Frozen Cocktail Samosas (150g)
가격	INR 78	INR 90	INR 150
업체명	Frish	Farsan	Farsan
제품 이미지			
제품명	Frozen Samosa Patti (190g)	Vegetable Samosas (350g)	Punjabi Samosas (540g)
가격	IN 65	INR 99	INR 99

2) eemli : <http://www.eemli.com/>

인도 통관 정보

1. 관세율

□ 냉동만두(HS CODE 1902.20) 수입관세율

2013년 냉동만두 관세율		
HS 코드	품목명	관세율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 (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38% (대한민국-인도 협정세율)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2. 통관 절차 시 관행 및 유의사항

□ 수입업자-세관공무원, 수입업자-현지 통관사 간 관계 중요

-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도 인도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액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침
-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과 원활한 관계가 있으면 유리함
- 따라서 현지 수입업자는 원활한 세관, 통관 절차를 위한 추가비용(뇌물)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델리 현지 수입업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비공식 뇌물비용은 통관 절차 시 발생하는 공식적인 비용의 2배 이상이므로 해당 비용을 미리 예상해야 함

“기본적으로 통관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되요. 간혹 신선 식품류를 수입할 때, 통관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냉장시스템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품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 냉장시스템을 켜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선 식품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³⁾

(첸나이 수입업자 인터뷰 중)

□ 서류작성 및 제출 후 수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오기, 오타자 등에 주의 요망

-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오류나 서류 상호간 불일치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2, 3주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함
- 포장명세서와 인보이스 작성 역시 철저해야 하는데, 인도 세관은 각 컨테이너 별로 내부에 들어있는 품목의 패킹 리스트와 인보이스 목록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하고, 한 컨테이너 안에서도 박스별로 화물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포장명세서와 인보이스를 철저히 작성해야 함
- 서류상의 오기 수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세관원에게 급행료를 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서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이 서류들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포맷이고 문구 하나하나에 민감해서 처음 작성하는 경우 100% 서류 통과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의심이 없고’ 라고 쓰도록 되어있는 서류라면, ‘구제역 문제가 없고’ 라고 쓰면 서류 통과가 안됩니다.”⁴⁾

(델리 한인업자 인터뷰 중)

□ 수입업자와 협의하여 통관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

- 한국에서 통관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다수가 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들의 경우 실질적 통관 업무를 각 지방세관의 다른 통관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는 브로커가 많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추천하는 통관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13개 주요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75% 이상을 처리함

- 인도는 약 7517km의 긴 해안선을 낀 반도국가임. 해안선을 따라 9개 주에 걸쳐 13개 주요 항구와 185개의 소규모 항구 등 총 198개의 항구가 있음
- 인도의 13개 주요 항만은 캘커타, 파라디프, 바사카파트남, 엔노어, 첸나이, 투티코

3)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인도편

4)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인도편

란, 칸들라, 뭄바이, 자와할랄 네루, 모르우고아, 뉴망갈로어, 코친, 할디아아이임.

- 13개의 주요 항 중에 상위 4대 항만은 뭄바이, 첸나이, 코친, 캘커타항임
- 이들 13개 주요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75%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항만 수송은 인도 전체 수송량의 95%를 담당함. 인도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인도의 항만 시스템은 재래식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나 향후 전산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선진화된 항만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항구마다 통관 기준이 다르며 최근에는 뭄바이 항구 통관 기준이 완화되어 뭄바이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수입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음

- 앞서 다룬 통관 절차 전반이 인도 내 수입 통관의 기본 절차이기는 하지만 같은 절차여도 세부적으로는 항구마다 절차와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이러한 기준 변경은 특정 주기 없이 유행, 분위기, 통관 담당기관 책임자 변경 등에 따라 변화함
- 현지 조사 시점 기준 최근(2013년 9월)에는 뭄바이 항구의 통관 기준의 해석이 완화되어 뭄바이를 통해 통관을 하는 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음

“현재는 한국식품들을 뭄바이에서 가장 쉽게 통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첸나이에 판매하는 물건들도 첸나이가 아닌 뭄바이를 통해서 들여오고 있어요. 전 첸나이에 사는 사람이라 매번 뭄바이를 갈 수 없는데도, 다른 곳으로 통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곳에 사람을 두고 통관 업무를 처리해요.”

(첸나이 수입업자 인터뷰 중)

“제가 델리로 물건을 들여왔었는데, 언젠는 통관이 되고 언젠는 안되더라고요. 요새는 아예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저쪽 뭄바이에 있는 사람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는 또 검사도 안하고 들여보내준다고 하고..”

(델리 한인업자 인터뷰 중)⁵⁾

□ 카스트 제도의 관습이 남아있어, 상위 카스트인 관세/회계사를 고용할 경우 쉽고 빠른 처리 가능

-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는 하나 인도 사회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에 의해 많은 부

5)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인도편

분이 좌우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수입 통관, 관세 절차를 대행하는 현지의 인력(관세사 등) 고용시 상위 카스트 출신인 인력을 고용하면 그들 간의 내부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절차에서 쉽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함

“인도는 카스트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계급 구분 철저하고, 같은 커뮤니티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회계사는 높은 카스트 제도의 사람을 고용할수록 그들의 인맥으로 일 처리가 쉽게 됩니다.” 6)

(텔리 한인업자 인터뷰 중)

□ 수입업자의 보험가입을 반드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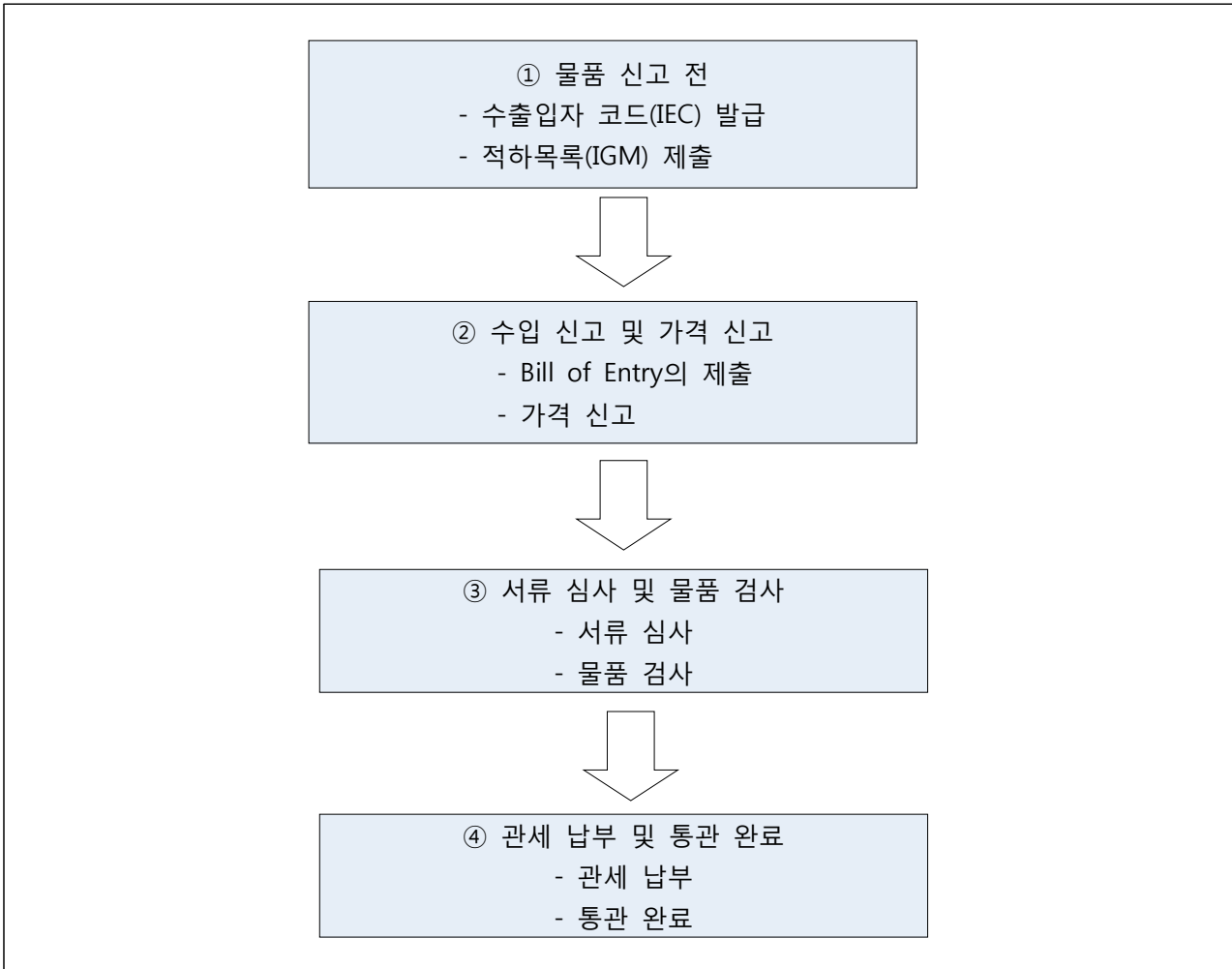
-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함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수입은 허용되나 C&F(Cost and Freight, 보험료 제외하고 운임까지 포함 인도) 조건 수입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 내륙운송보험 가입 필요

-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운송수단도 노후하기 때문에 내륙운송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내륙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함. 보험료가 선진국의 3배에 달하지만 운송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금 지급 건이 발생할 경우 후속처리와 가입금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보다는 현지에서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6)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인도편

3. 통관 절차



① 물품신고 전

①-① 수출입자 코드(IEC; Importer - Exporter Code) 발급

개요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인도상공부 무역부(DGFT;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으로부터 수출입자코드를 발급 받아야 함 (단,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발급 면제)
발급 절차	IEC 발급 신청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신청 - DGFT 사이트(http://dgft.gov.in/)의 Online IEC Application 이용 - 납세번호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Form-ANF 2A)에 은행 송금증 부분/여권 사이즈 사진 2매/ 납세번호 (PAN)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DGFT에 제출

7) 출처 : 트레이드 내비 (<http://www.tradenavi.or.kr/>)

①-② 적하목록(IGM; Importer General Manifest)의 제출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운송: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 - 육상운송 : 도착지에 도착 후 12시간 이내
미제출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물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할 수 없음 - 제출 지연 시 50,000 루피 이하의 Penalty가 부과됨

② 수입 신고 및 가격 신고

②-① 세관신고서(bill of Entry)의 제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적하목록 제출 후, 관할 세관에 bill of entry와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EDI를 통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EGATE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www.icegate.in/index.html) <input type="checkbox"/> EDI를 통하지 아니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Bill of Entry 4부를 준비하여 2부는 세관에 제출하고, 1부는 거래 은행에 제출하고, 1부는 수입자가 보관 - bill of Entry는 다음의 서류를 수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된 송장(signed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항공화물운송장 ▪ 필요한 경우 물품 관련 수입 라이선스 ▪ 필요한 경우 신용장/환어음 ▪ 보험서류 ▪ 화학물질의 경우 검사보고서 ▪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
사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bill of Entry를 제출할 수 있음 - 사전 제출 후 30일 이내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유효함
bill of Entry for warehousing /Ex-Bo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도착 즉시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일정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bill of Entry for warehousing을 제출함으로써 관세의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음 -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Ex-Bond bill of Entry를 제출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함

②-② 담보의 제공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또는 관세 정책,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예: 수출 촉진용 자본재 수입에 대한 감면) 은행의 보증서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

②-③ 가격 신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까지 인도는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세관 담당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를 하여 세액 확정 후 고지하고 관세자가 납부하는 방식이었음 - 2011년부터,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 후 세관 당국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self-assessment'를 관세에도 도입함
신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bill of Entry를 제출하는 때에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 분류/ 적용 관세율/ 과세표준/ 관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가격 신고함

③ 심사 및 물품 검사

③-① 서류 심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관 당국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서류 심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신고된 물품이 수입금지품 또는 제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 신고인이 제출한 bill of Entry 상의 상세 품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된 가격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관 당국은 심사 후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 받은 Bill of Entry 중 1부를 수입 신고인에게 반송함
----	--

③-② 물품 검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전체를 실물검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은 서류 심사에 의하고 무작위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만 Bill of Entry 상의 상세 설명과 일치한 지 여부를 실물 검사함
검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전 심사(First Check Appraisal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 세관 당국에서 서류 심사 후 물품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후 검사(Second Check Appraisal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후 세관당국이 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Channel Facility" 제도에 의하여 주요 우량,성실 수입자를 Green Channel로 분류하여 수입통관 시 물품검사를 면제함

④ 관세 납부 및 통관완료

④-①

납부 기한	- 관세는 세관이 서류 심사 후 Bill of Entry 1부를 수입 신고인에게 반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제외)에 납부하여야 함
납부 절차	- 납세자는 TR-6 challan 서식을 이용하여 지정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 - 납세자는 세관에서 반송 받은 bill of Entry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배서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 - 인도는 관할 세관마다 지정한 은행의 이름과 지점명이 다르므로 납부 시 유의하여야 함 - EDI를 통한 수입 신고와 연계하여 e-payment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세관에서만 이용 가능함

④-② 통관 완료

개요	-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	---

□ 특송에 의한 수입 (Import by Courier)

특송 제한 물품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물품은 특송에 의한 수입이 제한됨 - 귀중품/ 준귀중품 또는 귀금속/준귀금속 - 동식물 - 부패하기 쉬운 물품 - 수출촉진제도에 의한 수출전용물품(Export oriented unit) - 70Kg을 초과하는 물품
특송 수입물품 통관절차	- 특송물품은 문서/ 상업용 샘플/ 100만 루피 이상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서식에 의하여 전자적,비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함 - 특송물품은 10%의 범위에서 무작위 선별하여 실물 검사함

-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상 운송 수입은 약 3~4일 (FCL), 5~7일(LCL), 항공 운송은 약 2~3 근무일이 소요. 일반 품목이 아닌 경우(SEZ, EPC물품 등)는 1~2일이 추가 소요되며 중고 기계류인 경우는 10일 이상 소요됨. CFS 및 Airport는 일반적으로 화물이 CFS 및 Airport 도착 후 3일 이후부터는 체화료(demurrage charge)를 부과(해상 및 항공 동일함)
- 통관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도는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액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침

-
-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임. 즉,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현지 상사에 대한 수출이건 통관업무는 현지 통관 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필요 서류

- 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 서류

- 수출입 허가 번호 : 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o.)
- 구매 오더 : Purchase order
- 송장 : Invoice
- 공급 업체 이름 : Suppliers name
- 공급자 거래 은행 명 : Name of Suppliers Banker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인증서

- 수입화물의 통관

- 공급업자가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
- 선하 증권(B/L 또는 Air-way Bill No.)
- 송장 사본(Invoice copy)
- 물품 명세서(Packing list)
- 보험 증권(Insurance policy)

- 바이어가 통관 시 준비 서류

- 수입 코드 번호 : Importers code no.
- 수입 신고 : Import Declaration along with Bill of Entry
- GATT Declaration (일반적인 건의 경우 불필요, 택배(DHL 등) 이용 시, 제출하여야 함)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 인증서

식품 통관 시 주요 절차 및 규정내용

- 세관에서의 상품 운송 상태 확인

- 기본적인 개별상품당 요구된 적재량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품의 손상이나 오염을 유발하지는 않음

- 상품의 손상가능성 확인을 위한 외관 검사

- 외관상 상품이 부풀거나 불룩하게 튀어나왔는지 여부와 설치류나 벌레 또는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

라벨 규정 준수여부 확인

-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and the Packaged Commodities Rules 에 따른 라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라벨이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

기타 필수 규정

-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원재료명, 제조날짜, 배치번호, 유통기한 등과 모든 상품의겉 포장에는 유통기한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적혀 있어야 함. 유통기한과 수입일자사이의 기간이 제조일자로부터 유통기한까지 기간의 최소 60%가 남아있어야 함

IV 인도 라벨링 정보

1. 라벨링 유의사항

- 식품 라벨링 (Labeling) 규제 강화로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입식품들
 - 2013년 10월,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초콜릿, 비스킷, 파스타, 소스류 등 수입식품을 찾기 쉽지 않았음
 - 엄격해진 정부의 식품 라벨링 규정으로 외국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임
 - 규제 강화 이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많은 컨테이너가 수입을 거부당하고 있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도 항구와 공항에 억류된 수입식품 규모만 75억~100억 루피라고 함
- 식품안전법 라벨링 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 이행 강요
 - 보건부 산하 수입식품 감독 및 규제기관인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최근 수입 식품의 인도 반입 시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화물에도 라벨링(Labeling)을 해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함
 - 식품안전기준청은 지난 두 달간 규제의 엄격한 이행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제품의 원산지과 출처 표기를 필수로 하는 제품 정보를 이전에 허용했던 스티커 부착 형식이 아닌 제품의 화물에도 인쇄된 형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와 식품업계 모두 양측 주장 굽히지 않아 문제 심화
 - 정부 측, 국민의 안전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혀
 -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 강화가 중국발 우유 안전성 문제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유럽 전역의 eColi(식중독균) 바이러스 경고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힘
 - 제품에 대한 정보가 중국어나 아랍어로 된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이 인도로 다시 수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강화가 필수라고 함
 - 현재 인도 내 항구에서 몇몇 샘플에 대해 식품안전 기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은 수입업자들에게 되돌아가거나 항구에 묶이게 됨

- 수입업체,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라벨링 인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제 완화 주장

- 수입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 체인 Nature' s Basket의 Mohit Khattar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청의 규제 강화로 식품업체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함. 특히, 업계에서는 라벨링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특정 소규모 포장제품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 제기
- Borges India의 Rajneesh Bhasin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청이 제품 정보 스티커 부착을 금지함에 따라 직접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힘
- Max Food 대표 Amit Lohani에 따르면 현재 라벨링 규정으로 식품수입 규모가 40% 가까이 줄었으며 이 회사는 지난 15년간 식품수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최소 1,100여 개의 컨테이너가 규정 미달로 버려지거나 되돌려지고 있다고 함

< 개정된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법률 >

구분	개정된 내용
Section 23	- 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 ① 규정에 맞게 라벨링되지 않은 포장상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조, 유통,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중개인이나 브로커에게 운송할 수 없음: 포장된 상품 또는 특정한 상태, 클레임, 디자인, 양, 영양성분 등에 대해 어떤 거짓된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됨 ② 모든 식품산업 관계자는 식품의 유형, 포장에 사용된 재료, 포장 상태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Section 25	- 수입식품 준수 규정 ① 다음에 인도로 수입될 수 없음 (i) 안전하지 않거나 수준 미달의 식품을 포함하는 경우 (ii) 규정하는 수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식품인 경우 (iii) 동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규제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② 중앙 정부는 식품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무역법(1992)에 근거해 규제 가능
Section 26	- 식품산업 관계자 의무 규정 ① 모든 산업 관계자는 식품 안전규정법률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상품의 생산, 제조과정, 수입,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책임을 짐

Section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부로부터 권한을 인정받은 관리자는 샘플을 요구해 분석하게 되며 5일 이내에 결과가 이 부서에 전달됨 ⑥ 권한을 인가받은 관리자 또는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됨

출처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www.fssai.gov.in/)

2. 라벨링 표기내용

가공식품 제품 라벨 영양 표시 사항

-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 라벨의 모든 표시사항은 현지 언어인 힌두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특히 영양표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영양 표시

- 영양표시는 100g 또는 100ml 단위나 1회 공급량 단위로 다음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열량(kcal)
- 단백질, 탄수화물(설탕 함량), 지방
-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양에 대해 표시할 때는 포화지방산의 양, 일가포화지방산 및 다가포화지방산은 g 단위, 콜레스테롤은 mg 단위로 표시
-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는 국제단위에 따라 표시
-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강화식품의 경우 해당 영양소의 첨가량을 표시하여야 함
- 원료성 식품(밀, 쌀, 곡류, 향신료, 허브, 설탕, 커피, 과일, 채소, 생수, 미네랄 워터, 주류, 최소 가공 과채류, 피클 등)이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벤더들에게 공급되는 벌크 포장 제품의 경우 영양표시 제외

도매 및 벌크 포장 제품 표시 사항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도로 들어오는 도매 및 벌크 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표시를 요구하고 있음

- 첨가물 목록

- 제조 및 포장 일자
- Best before date(상미기한) / Expiration date(유통기한)
- Vegetarian 로고 / Non-vegetarian 로고
- 로트 번호 또는 배치(Batch) 넘버 또는 코드 넘버
- 수입자 및 제조자 이름과 주소
- 수입국

3. 인증⁸⁾

□ 채식, 비채식 식품 표시

- 제품 겉면에 채식(VEG.) 또는 비채식(NON-VEG.) 표시가 의무적이며, 육류 식품은 힌두교에서 금기시하는 소고기 성분을 배제해야 함



출처 :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인도편

- Veg/Non-Veg 표시

- ‘Non-Vegetarian’ 표시가 된 식품은 브라운 컬러의 표시를 해야함
- 계란만 함유된 Non-Vegetarian 식품의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표시와 함께 병행 기재하여야 함
- Vegetarian 식품의 경우 녹색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크기는 다음 기준에 준함

8)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인도편

< VEG 표시기준 >

SI NO.	주 표시 가능 범위	최소 사이즈 (직경 mm)
1	100cm ² 이하	3
2	100~500cm ²	4
3	500~2,500cm ²	6
4	2,500cm ² 이상	8

출처 : 글로벌윈도우(<https://www.globalwindow.org/>)

- Veg/Non-Veg 표시는 보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 뒷면 또는 표시면이나, 제품명이나 브랜드명과 인접하게 표시하며 라벨, 용기, 팜플렛, 리플렛, 매체용 광고 자료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

< 수입식품의 Vegetarian 표시 사례 >



출처 : KATI

※ 참고자료

GTA : <http://www.gtis.com/>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트레이드 내비 : <http://www.tradenavi.or.kr/>

글로벌윈도우 : <https://www.globalwindow.org/>

Tradus : <http://www.tradus.com/>

eemli : <http://www.eemli.com/>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 www.fssai.gov.in/

KATI 심층조사결과보고서 인도편